

예산총칙

2023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2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512,513,900	15,375,417
일반회계	510,193,557	15,305,807
특별회계	2,320,343	69,610
기타특별회계	2,320,343	69,610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72,076	2,162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259,767	7,793
주차장특별회계	1,988,500	59,655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사항 없음.

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"계속비 사업 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,665,69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7,7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이용할 수 있다.